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 규정, 또는 규칙의 힘과 효과는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법률 조언이 아니라는 이해 아래 배포되며, 따라서 본 핸드북은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의 출판 이후의 법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참관인의 책임입니다.

이념 및 사명

"오렌지 카운티 시민에게 선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의 신뢰성을 수호하며, 그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전

"선거 행정의 우수성을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의 확신과 신뢰를 고취한다."



REGISTRAR OF VOTERS
1300 South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California 92705
(714) 567-7600
FAX (714) 567-7556
ocvote.gov

BOB PAGE
Registrar of Voters

Mailing Address:
P.O. Box 11298
Santa Ana, California 92711

친애하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 참관인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선거 참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관리국장으로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본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은 선거 참관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포괄적 안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매뉴얼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참관인을 관리하는 법률, 선거 및 투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참관인에게 공개된 기타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저희 웹사이트 ocvote.gov/observe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힘과 효과는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법률 조언이 아니라는 이해 아래 배포되며, 따라서 본 핸드북은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및 캘리포니아 정부법을 포함한 해당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함께 균일하고 일관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Bob Page (밥 페이지)
선거관리국장

목차

공개 참관	1-2
일반 참관인 가이드라인	3-7
참관인에게 허용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참관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참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국 시설 운영	
미디어 구성원	
어떤 선거 활동이 참관 가능한가요?	
선거일 전 - 시작하기	8-15
투표용지 제작	
일반 투표 장비 준비 및 테스트	
우편투표(VBM) 투표용지 처리 절차	
무엇을 참관할 수 있나요?	
누가 참관할 수 있나요?	
무엇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수거되나요?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나요?	
투표센터 운영	16-17
운영 시간	
투표센터 개장	
투표센터 마감	
도로 인덱스	
투표권법과 캘리포니아 선거법 아래 언어 지원	
선거일 후 - 투표 개표하기	18-21
참관	
작업 공간 의무 사항	
단계	
최종 직전 공식 결과	
공식 개표 점검	
조건부 유권자등록/임시 투표용지	
조건부 유권자등록 절차	
1% 수작업 집계	
위험 제한 감사	
부록 A: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22-30
부록 B: 법령 참고자료	31-57
부록 C: 유권자 권리장전	58-59

공개 참관

중앙 처리 절차 참관

선거관리국은 광범위한 참관을 허용하는 포괄적 해결안을 개발했습니다. 이 해결안은 카메라 및 대형 시청 화면, 근무 가능한 직원 및 물리적 참관 공간을 포함합니다. 의미 있는 참관 접근성 제공 외에도, 유권자, 선거관리국 직원 및 참관인의 안전과 투표용지 및 유권자 정보의 개인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투표용지 처리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과 업무 요소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참관 과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해결안의 유연성의 한계는 실제 물리적 공간과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시청 화면을 설치할 공간이 한정적이며 카메라의 개수 역시 한정적입니다.

현장 참관

참관 가능한 중앙 처리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논리 및 정확도 테스트
- 선거일 전, 중, 후 우편투표 처리 절차
- 선거일 밤 운영
- 선거 후 개표 점검
- 서명 확인
- 투표용지 복제
- 임시 투표 처리 절차
- 선거 후 감사

많은 참관 가능한 활동에는 화면이 설치되며 현장 참관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에 따라 적어도 세 명의 일반인이 각 모니터에서 참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안전 예방 조치를 위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이 공간, 장비 제약 및 해당 안전 예방 조치를 고려해 1 회 당 최대 참관 인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원격 참관

실시간중계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일반인은 다양한 작업을 보기 위해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공되는 처리

절차와 화면은 일반적으로 개표 점검 절차와 재개표 절차를 포함합니다. 원격 실시간 중계는 개별 작업대, 유권자 정보, 또는 서명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 처리 절차를 원격으로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선거일 28일 전부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 원격 참관 기회는 있지만 이의제기는 언제 어떤 이유로도 원격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조치

아래 명시된 권리와 책임 외에도, 선거 참관인은 참관이 발생하는 카운티 내 장소에서 모든 보건 및 안전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참관인 가이드라인

선거 참관인

선거 참관인은 투표 및 선거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투표센터, 투표용지 투입함,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관권은 투표 및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선거 과정을 참관하는 대중의 권리와 책임에 대응하며 선거 참관인의 허용 및 금지 행동 목록과 관련 선거법을 포함합니다.

참관인에게 허용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지정 구역에서 투표 및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참관.
- 개장 및 마감을 포함한 투표센터 일일 운영 참관.
- 분류, 서명 확인, 수거 및 반환 작업, 복제, 스캐닝 등의 우편 투표용지 처리 절차 확인.
- 임시 투표용지 처리 절차 확인.
- 투표 활동의 감사 및 기타 개표 점검 실시 중 참관.
-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투표 집계 참관.
- 모든 과정 참관 및 필기.
-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투표센터 책임자 또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지정된 참관 홍보대사에게 직접 질문.
-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에서만, 선거법 조항 위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휴대용 기기 등의 전자 기기 사용.
- 직원이 확립된 우편 투표용지 처리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

참관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 모든 선거 참관인은 투표센터에 입장할 때 투표센터 직원에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참관하는 경우, 선거 참관인은 반드시 방문자 접수처에서 접수하고 일일 방문자 배지를 받아 시설 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선거 과정 참관 중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 유지.
-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 확립된 카운티 참관 규칙/규정 확인 및 준수.

참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어떤 방식이든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 투표 과정에서 사용 중인 기표소 또는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 투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물품, 장비, 또는 선거 직원을 만지는 행위.
- 체크인 테이블에 앉거나 뒤에 서는 행위.
- 현재 처리 절차 진행 중인 투표센터 직원과 소통하는 행위.
- 투표센터 안에 있거나, 투표하는 줄에 서 있거나,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 또는 가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100 피트 내에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 또는 투표 자격에 대해 대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투표센터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군집하는 행위.
- 선거 자료를 게시하거나 선거운동 배지, 단추 또는 의류를 착용하는 행위.
- 치안관, 사설 경호원 또는 안전 직원 제복을 착용하는 행위.
- 유권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증거 제시를 바탕으로 투표구 위원회만 가능합니다.
- 다른 참관인이 자료 또는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 중앙 처리 장소 내에서 전화/카메라를 사용하는 행위.
- 유권자 데이터 또는 투표용지 정보를 기록하거나 송출하는 등, 선거법 또는 선거관리국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 밖에서 전화/카메라 또는 기타 동영상 녹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EC § 2302)
- 아래 열거된 목적으로 투표 장소 내, 그리고/또는 투표 장소에서 100 피트 내에서 휴대전화/카메라 또는 기타 동영상 녹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실내 투표 장소의 경우, 해당 거리는 투표 장소가 있는 건물 입구로부터 측정됩니다. 투표센터, 가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서 유권자를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녹화하는 행위는 타인의 투표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 불법적인 유권자 위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C § 18541)
-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용지 셀카”를 찍는 것이 허용되며 참관인은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 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서명이 유권자 등록 기록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선거관리국 직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모든 선거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강요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위력, 폭력, 강압, 또는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 3년까지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C § 18540)

- 선거 및 개표 점검, 또는 투표하는 유권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3년까지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C § 18502)

선거관리국 시설 운영

- 참관 구역에서 음식물 또는 음료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관인은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참관 구역에 입장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검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관인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작업과 처리 절차는 계속됩니다.
- 참관인은 투표용지 처리 직원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관하는 절차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참관하는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련 물품, 장비, 또는 선거 직원 접촉 금지, 작업 중인 직원에게 직접 질문 금지.
- 단체 참관인의 경우 선거관리국장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해당 단체를 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 휴대전화, 태블릿 또는 전자기기는 진동 또는 꺼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 외에는 통화 금지.
- 승인되지 않은 녹음기, 무전기, 또는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관 구역 내에서는 침묵이 요구됩니다.
- 참관 중인 절차 이전 및 도중에 참관 홍보대사에게 조용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관 중인 절차에 참여하는 직원과는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 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정 절차 참관 홍보대사에게 서면 질문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참관 홍보대사에게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이의제기 양식을 제공합니다.
- 선거관리국은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작업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이의제기는 중단됩니다.

미디어 구성원

기자, 카메라 팀 및 기타 미디어 구성원은 유권자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투표 절차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투표센터 및 선거관리국에 출입이 허용됩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미디어에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에 기표 중인 유권자의 근접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촬영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유권자가 미디어와 소통한 경우, 투표용지 투표함, 드라이브스루 제출 팀, 투표센터 직원, 또는 선거관리국의 선거관리국 직원에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 구역 - 투표센터 내, 투표센터 가두 투표 구역, 투표센터 드라이브스루 제출 구역,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 내에서 인터뷰하는 행위. 이 금지조항은 미디어를 초청하여 투표 장면을 촬영하는 후보자의 인터뷰를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제 2 편 제 20878(a)(8)절에 따라, 모든 인터뷰는 투표센터 입구 또는 외부 투표 장소로부터 최소 25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투표센터에서의 미디어 참석은 선거관리국과 조율되어야 합니다. 투표센터 직원이 미디어에 선거관리국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미디어 문의, 또는 발언 또는 인터뷰 요청은 (714) 567-5197 로 전화해 주십시오.

어떤 선거 활동이 참관 가능한가요?

선거일 전

- 우편 및 현장 투표용지의 중앙 집계 실시를 위한 투표 시스템의 준비 및 테스트.
- 투표구 물품 조합 및 배포.
- 우편투표 작업 (투표용지 반납; 서명 및 자격 확인; 투표용지 개표 준비;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복제; 투표용지 스캔;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문제 해결).
- 투표센터에서 수령한 임시 투표용지 처리 (해당하는 경우).

투표 기간 & 선거일 밤

- 투표센터 운영
- 투표 집계 및 보고
- 투표용지 반납

선거일 후

- 투표센터에서 수령한 임시 투표용지 처리
- 선거일 또는 그 이후에 수령한 우편 투표용지 처리
- 투표용지 복제
- 기명 투표용지 처리
- 선거 후 감사

선거일 전 - 시작하기

투표용지 제작

본 절차의 대중 참관을 환영합니다. 본 절차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어떤 규정 또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단, 투표용지 제작은 후보자, 법안, 주 전역 발의안, 헌법 개정안, 그리고 투표용지에 오를 자격을 갖춘 발의안의 등록 마감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선거관리국은 다음을 포함한 투표 자료의 양식 선정, 번역,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1) 공식 투표용지; 그리고
- (2)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투표용지는 어떻게 제작되나요?

투표용지 유형

투표용지 제작은 각 투표구의 특정 경선 조합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조합을 “투표용지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당 예비 선거에서는 각 정당 투표용지를 위한 추가 투표용지 유형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순서

-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바탕을 둔 공식과 해당 공직에 바탕을 둔 “순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선거 82 일 전에 주 총무처(SOS)는 알파벳 글자의 공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합니다.
- 주 전역, 연방 의회, 카운티 전역 및 수퍼리어 법원 사법 후보자의 이름은 주 하원 선거구별로 순환합니다. 주 상원, 하원, 지방정부, 수퍼바이저 위원회 및 카운티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SOS 무작위 알파벳을 따르지만 순환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생성

-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는 Hart InterCivic (Hart) 투표 시스템의 BUILD 내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 BUILD 는 이 데이터를 투표용지 스타일 및 음성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 생성된 스타일 데이터는 보안 vDrive 에 쓰여집니다.
- vDrive 는 투표용지 스타일 데이터의 복사본을 각 투표센터에서 사용하는 Hart 시스템의 Verity Print, TouchWriter 및 Scan 기기로

전달하고, 투표를 집계하는 시스템의 Count 어플리케이션으로 기표가 된 투표를 전달합니다.

Verity Central

- Verity Central 은 종이 투표용지의 관내 스캔을 가능하게 합니다.
- 종이 투표용지의 데이터를 캡처하는데 사용됩니다; 투표용지는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 이미지화,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해결되고, 투표들은 캡처되어 vDrive 에 저장됩니다.

일반 투표 장비 준비 및 테스트

각 자격을 갖춘 정당, 모든 선의의 시민 연합, 또는 미디어 조직이 참가할 수 있고, 집계 기기,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의 준비와 작업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최대 2 명의 대표자가 중앙 개표 장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대표자는 선거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직자는 각 선의의 시민 연합 또는 미디어 조직이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총 참석 대표자 인원을 최대 10 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004

장비 테스트

- Verity Touch Writers, 프린터, 스캐너를 포함한 투표 장비의 모든 부분은 매 선거 전에 유지보수를 거칩니다.
- 장비는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보이며 데이터가 올바르게 백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됩니다. 또한 모든 케이블이 적절하게 통신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되는 프린터에 종이를 끼우고 실험용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 Verity 스캔 기기에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각 선거 전에 재설치되고 주 총무처 사무실이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선거일 이후,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선거 기간 동안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증합니다.

논리 및 정확성 테스트 (L&A)

- L&A 테스트는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시스템 및 투표 장비에 실시됩니다.
- L&A 는 선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별 장치이자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같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확성은 결과가 알려진 실험용 투표용지를 기표하고 집계하여 테스트합니다. 알려진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고, 불일치의 원인을 해결하며 (해당하는 경우), 다시 테스트합니다.

- 실험용 투표용지는 모든 경선과 선택을 포괄하도록 개발된 사전 정의된 각본에 따라 선택되고 기표가 됩니다. 논리 테스트는 투표 집계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유권자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요약하고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 테스트 전, 일반인을 테스트에 초청하는 테스트 일정 서면 공지를 미디어에 이메일 합니다. 이 정보는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도 게시됩니다.
- 테스트 투표가 완료된 후, vDrive 에 저장된 테스트 결과는 집계를 위해 Count 어플리케이션으로 읽습니다.
-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투표구별 보고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투표구 결과를 찾습니다. 해당 투표구의 투표 기록 및 투표 각본과 대조하여 잘못된 투표용지, 경선 및 옵션을 식별합니다.
-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테스트와 해결은 반복됩니다. 오직 불일치가 없는 투표 시스템 장비만 선거에 사용됩니다.
- L&A 테스트를 선거일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여 각 투표 시스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실험용 투표용지의 투표를 정확하게 집계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정의

- 사전 정의란, 창고 직원이 투표센터의 투표 장비에 수행하는, 장비가 투표센터에 전자식으로 할당된 (“정의된”) 절차입니다.
- vDrive 는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 (VBM) 투표용지 처리 절차

무엇을 참관할 수 있나요?

선거 전과 후, 참관인은 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 절차와 VBM 투표용지 개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다루는 개인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참관하는 절차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다루는 등으로 질서 있는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 절차 또는 VBM 투표용지 개표 절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Elec. Code §15104(a), 15104(e)

누가 참관할 수 있나요?

모든 카운티 대배심원 구성원과 공화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올린 기타 정당 및 기타 이해관계 단체의 각 최소 1인의 구성원이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부터 투표용지 개표 및 처분까지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는 방식을 관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104(b)

무엇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참관인은 오직 VBM 투표용지를 처리하거나 서명을 확인하는 투표용지 처리 직원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의만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결정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이의 제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권자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서명 확인;
- 훼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복제; 그리고
- 선거일에 집계되기 전, 조작 방지를 위한 VBM 투표용지의 보안.

Elec. Code §15104(d)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VBM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때 유권자가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의 시점에 이의제기의 유효성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Elec. Code §15105, 15106

- 이의제기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양식이 제공됩니다.
-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은 적시에 제공됩니다.
- 선거관리국에 접수된 모든 이의제기는 기록에 추가됩니다. 선거에서의 이의제기 기록과 모든 이의제기 양식은 해당 선거를 위한 다른 자료와 함께 보관됩니다.

이의제기를 목적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또는 전화/카메라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수거되나요?

2인 1조의 훈련된 직원이 매일 미국 우체국과 카운티 전역에 있는 125 개 이상의 OCROV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VBM 투표용지를 수거합니다.

- 엄격한 이관 절차가 따릅니다.
- 투표용지 수거팀은 GPS 로 추적되며 무전을 통해 파견팀과 지속적으로 통신합니다.
- 수거팀은 개봉하는 각 투표용지 투입함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 경로는 직원과 투표용지의 안전을 위해 매일 달라집니다.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나요?

투표용지 수령

OCROV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수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센터에 제출한 VBM 투표용지가 Santa Ana 에 있는 OCROV 사무실로 반송될 때 이관 절차 서류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 수거 가방을 감사합니다.
- 보안 밀봉 장치 및 이관 절차 문서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는 보안 구역에 미국 우체국, 투표용지 투입함 및 투표센터별로 따로 분리 및 정리됩니다.
- 이관 절차 문서를 보관합니다.

투표용지 분류

- 밀봉된 채로 VBM 투표용지 봉투를 스캔하여 서명 확인을 위해 분류합니다.
- 서명을 유권자등록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봉투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 분류기를 처음 통과하면 투표용지 수령을 확인하는 알림이 유권자에게 전송됩니다.
- 서명을 확인하면 봉투는 투표구별로 분류하여 모아둡니다.
- 이의가 제기된 반환 투표용지는 추가 검토를 위해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서명 확인

- 선거 29 일 전부터 OCROV 직원은 반환된 VBM 봉투 처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OCROV 직원이 봉투 밖의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고 유권자 이력을 업데이트하여 현 선거에서 VBM 투표용지를 반환했다고 기록합니다.
- OCROV 직원이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 또는 사전 승인된 우편 투표용지 서명과 비교하여 서명을 확인합니다. 오직 선거 직원만이 이 비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3019
CCR, 제 2 편, 7 부, 8.3 장

투표용지를 꺼내어 개표 준비

- 선거일 29 일 전부터 OCROV 직원은 투표용지를 서명이 확인된 봉투에서 꺼내어 기계 판독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OCROV 직원은 선거일 밤 투표소가 마감될 때까지 개표에 접근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용지가 바코드가 있는 봉투로부터 분리되므로 유권자는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 VBM 위원회에 배정된 OCROV 직원이 VBM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펴고 평평하게 하고 검사하여 투표구별 그룹으로 유지합니다.
- VBM 위원회가 이니셜, 서명이 되어있거나 훼손되어 스캔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를 확인합니다.
- 훼손된 투표용지는 OCROV 직원에 의해 복제됩니다.
- 스캔 준비가 된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스캔 및 투표용지 분석을 위해 준비됩니다.
- 봉투는 모든 투표용지가 꺼내어졌는지 재확인됩니다.

Elec. Code §15101

투표용지 복제

원본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적절하게 기표가 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스템으로 스캔하기 위해서는 복제되어야 합니다.

- 복제가 필요한 투표용지는 VBM 위원회에서 수령합니다.
- 투표용지는 손이나 전자 투표용지 기표 기기로 복제하며 원본 투표용지의 선택을 그대로 기표합니다.
- 원본 투표용지는 “ORIGINAL”(원본) 라벨이 붙으며 복제 투표용지는 “DUPLICATE”(복제) 라벨이 붙습니다.
- 각 투표용지 세트는 번호를 붙여 기록합니다.
- 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복제 투표용지를 비교합니다.
- 복제 투표용지는 스캔하도록 보내고 원본 투표용지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투표용지 스캔

- 투표용지는 보안 투표용지 스캔실로 가져와서 처리됩니다.
- 투표용지는 약 100 장의 묶음으로 나누어 시스템에 스캔합니다.
- 묶음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작업자는 이 묶음을 저장하고 스캔 묶음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묶음을 성공적으로 스캔하지 못하는 경우, 묶음은 저장되지 못하고 다시 스캔됩니다.
- 묶음에 거부되는 투표용지가 있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묶음에서 제외하고 다시 스캔합니다.
- 스캔한 묶음은 전체 선거 및 개표 점검 기간 동안 보안 장소에 보관합니다.
- 개표 점검 기간 마지막에 묶음들을 밀봉된 상자에 넣어 저장하고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투표용지 해결

- 해결은 투표가 과소 투표, 과대 투표, 기명, 또는 훼손된 투표 대상 지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유권자 의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OCROV 직원은 오직 과소 투표에만 Verity Central “Auto Resolve” 자동 해결 기능을 사용합니다.
- 모든 해결 활동에서 OCROV 직원은 수용되어 기록될 때까지 투표용지 이미지를 검토하고 투표용지를 해결합니다. 직원은 캘리포니아 규정 제 2 편 제 20980 절에서 제 20985 항까지에 포함된 통일 투표 집계 기준을 따릅니다.
- 해결이 완료되면 선거일 오후 8 시 이후에 다른 투표 결과 집계에 더해지도록 기록이 저장됩니다.

투표용지 집계

VBM 투표용지가 검증되고 해결되고 기록된 이후에만 집계되고 개표 점검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109

투표용지를 VBM 투표용지는 중앙식으로, 투표센터에서는 직접 스캔한 후, 투표용지를 vDrive 에 저장하여 집계를 위해 집계실로 가져갑니다.

- 투표 집계에 사용하는 기계는 각 선거 전에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로 다시 재이미지화 됩니다.
- 소프트웨어는 각 선거 전과 후에 검증하여 조작된 적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 집계 기계는 인터넷 또는 어떤 외부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집계실로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추가 단계의 물리적 보안 통제가 있습니다.

투표센터 운영

운영 시간

투표센터 직원은 예정된 투표센터 개장 시간 30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특정 투표센터:

특정 투표센터는 선거일 10 일 전부터 선거 4 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합니다.

모든 투표센터:

모든 투표센터는 선거일 3 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합니다.

선거일에는 모든 투표센터가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합니다.

투표센터 장소와 운영시간의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 를 방문하십시오

투표센터 개장

투표소는 투표를 하는 첫 날에 개장합니다. 투표소 개장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투표센터는 첫 날 이후 선거일까지 매일 휴장하고 재개장 합니다.

개장 첫날에만 첫 유권자가 도착할 때 제로 보고서와 투표소 개장 보고서가 연결되어 하나의 긴 보고서로 잘립니다. 그 이후로는 투표소 보고서를 인쇄하고 잘라서 투표센터의 일일 봉투에 추가합니다.

투표센터 마감

오후 8 시에 투표소가 마감할 때 유권자가 줄에 서 있는 경우, 한 명의 투표센터 직원이 줄 끝에 서서 마감 시간 후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투표소가 마감됐음을 설명합니다. 투표소 마감 전에 줄을 선 유권자는 투표가 허용됩니다.

투표소 마감 전에 도착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된 후, 투표센터 직원은 투표소 일시 중단 보고서를 인쇄하고 잘라서 일일 봉투에 추가합니다. 투표센터 직원은 종이 투표용지 개수와 투표용지 스캔 개수를 일치시킵니다; 불일치의 경우 선거관리국에 알려져 불일치를 조사합니다. 선거관리국 직원은 또한 세어졌거나, 버려졌거나, 취소됐거나, 식별 불가능한 기표, 과대 투표, 또는

기타 법률상의 이유로 무효가 된 투표용지 개수도 VBM 및 임시 투표용지를 포함한 기록된 투표 개수와 투표 개표 시스템으로 일치시킵니다. 선거일 밤에 투표센터 직원은 투표소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폐장합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매일 저녁 수거 센터로 반환됩니다.

도로 인덱스

도로 인덱스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전자 목록으로 어떤 유권자가 투표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4294(b)절에 의해 요구되는 도로 인덱스는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도로 인덱스는 기밀한 유권자등록 정보를 포함하므로 유권자등록 정보 신청서를 완료한 참관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인덱스를 보려면 ocvote.gov/streetindex 를 방문하여 웹사이트의 양식을 작성하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십시오.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도로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투표권법과 캘리포니아 선거법에 따른 언어 지원

오렌지 카운티는 연방 투표권법 제 203 절에 의해 다음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와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국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베트남어

오렌지 카운티는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유권자가 유권자등록을 할 때 선호하는 제 203 절 언어를 표시하면 번역된 선거 자료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가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선호 언어의 투표용지를 원하는 경우, 투표센터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4201 절은 또한 주 총무처에서 결정한 다른 언어로 된 facsimile 투표용지(번역된 참조 투표용지로도 알려짐)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일 후 - 투표 개표하기

참관

- 일반인 누구나 중앙 개표 장소에서 모든 절차를 참관할 수 있으나, 선거 공직자 또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그 목적으로 고용 및 지정한 1 인을 제외한 아무도 투표용지 용기를 만져서는 안 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를 운용 중인 구역의 출입은 선거 공직자가 허가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중 종이 투표용지의 수작업 개표에서 검토 중인 투표용지 및 집계표는 참관인의 명확한 시야 내에 있어야 합니다.

Elec. Code §15204

작업 구역 의무 사항

- 참관인은 개표 점검 작업 중에만 투표용지 개표 점검 작업 구역에 입장할 수 있으며 일반 참관을 위한 지정 구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개표 점검 작업 구역 내에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고, 전자 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참관인은 참관을 위한 화면에 제공되는 작업대의 정보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선거관리국의 지정 참관 홍보대사에게 해야 합니다.
- 선거 참관인은 과정 중에 필기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개인 신원 또는 연락처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국은 건물을 나가기 전에 참관인의 필기를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계

개표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모두 일반에 공개됩니다:

- 최종 직전 공식 결과;
- 공식 개표 점검;
- 1% 수작업 집계;
- 위험 제한 감사;
- 투표용지 밀봉 및 처분; 그리고
- 인증, 투표 진술서 및 선거 인증서.

최종 직전 공식 결과

- OCROV 직원은 선거일 밤 8 시 투표소 마감 직후부터 모든 투표센터가 처리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하여 모든 투표센터의 투표 및 선거일 전

수령한 개표 승인된 VBM 투표용지를 수거, 해결 및 집계합니다. 선거일 및 그 이후에 수령한 VBM 투표용지는 후속 결과 업데이트에 포함됩니다.

- 선거일 밤 8 시 5 분부터 OCROV 는 경선별 및 투표구별로 보고된 집계 결과를 대중과 주 총무처에 공개합니다. 투표 결과는 선거 공직자가 공식 개표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비공식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직전 공식 선거 결과 배포는 선거일 밤 오후 8 시 5 분에 시작합니다. 투표센터 결과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오후 9 시 30 분 및 그 후 30 분마다 모든 투표센터가 보고될 때까지 업데이트됩니다.

Elec. Code §353.5, 15150-15213, 15320

공식 개표 점검

본 단계에서 OCROV 직원은 모든 발행하고, 투표하고,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감사하고 처리합니다. 본 단계는 다음 작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반환한 모든 자료 및 물품 점검.
- 최종 직전 공식 개표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한 VBM 또는 임시 투표용지 처리 및 개표.
- 유효한 기명 투표 개표.
- 필요한 경우 훼손된 투표용지 복제.
- 필요에 따라 최종 결과를 위원회 및 주 총무처에 보고.

Elec. Code §15302

조건부 유권자등록/임시 투표용지

조건부 유권자등록(CVR)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의 기존 15 일 등록 기한을 연장하여 선거 14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임시로 등록 및 투표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유권자는 투표센터에서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센터를 떠나 나중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CVR 을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유권자등록 절차

- 유권자는 선거 공직자의 입회 아래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있으며 투표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투표 후, 투표용지는 선거 공직자에게 반환되기 위해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밀봉됩니다.
- 그밖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자신의 배정된 투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 주 전역 유권자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유권자 이력 교환의 사용으로, 임시 투표용지는 투표 및 개표 점검 기간 언제라도 검토 및 검증되어 중복 투표를 방지합니다.
- 임시 투표용지는 VBM 투표용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검사, 검증 및 처리됩니다. 각 투표용지는 다음을 고려하여 개표 승인 전에 검토 및 조사됩니다: (1) 유효한 서명; (2) 현 카운티 유권자등록; (3) 전 카운티 유권자등록; (4) 현 등록 주소 대 새 주소; (5) VBM, 임시 또는 투표구 투표용지 반환 여부; 그리고 (6) 투표용지가 투표된 투표구.
- 임시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있는 경우, 선거 공직자는 투표할 수 있는 경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의 모든 경선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는 VBM 투표용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경선의 일부에만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부분을 새 종이 투표용지에 복제하고 그 복제된 투표용지를 VBM 투표용지처럼 처리합니다. 투표용지가 전자식으로 투표되었고 개표될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투표는 집계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만 집계될 수 있는 경우, 투표할 수 있는 경선만 집계됩니다.

Elec. Code §14310-14312
CCR 제 2 편, 7 부, 1 장, 3.5 절

1% 수작업 집계

1% 수작업 집계는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인증 전에 수행되는 선거 후 감사입니다.

-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선거의 공식 개표 점검 동안,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는 VBM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기에 의해 집계된 투표용지의 공개 수작업 집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선거 공직자는 공개 수작업 집계 대상인 초기 카운티 내 투표구의 1% 또는 VBM 투표용지 묶음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 주 총무처에서 채택하는 무작위 숫자 생성기 또는 규칙에 명시된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작위 추첨은 공개되며 참관 가능합니다.
- 초기 카운티 내 투표구의 1%가 투표용지의 모든 경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든 경선이 수작업 개표 감사에 포함되도록 추가 투표구를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수작업 개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가 선정 및 집계 실시 전에 최소 5일 이상 수작업 개표의 시간과 장소 및 공개 수작업 집계 대상인 투표구

또는 묶음 선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공고를 제공하는 공개 절차여야 합니다.

- 집계 위원이 4 인 1 조로 캘리포니아 통일 투표 집계 기준에 따라 각 투표용지를 손으로 개표하여 수동으로 집계합니다
 - 1명은 투표를 읽습니다
 - 1명은 집계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2명은 집계표를 이용해 투표를 집계합니다
-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는 1% 수작업 집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투표 공식 개표 점검 인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표 시스템 집계와 수작업 개표 사이의 불일치를 특정하여 각 불일치의 해결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Elec. Code § 15360

위험 제한 감사

위험 제한 감사(RLA)는 선거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추가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20 자리 무작위 시드 번호를 생성하는 공개 추첨이 실시됩니다. 결과가 올바르다는 95%의 신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작위 시드 번호를 사용하여 감사할 투표용지를 선정합니다. 무작위 추첨은 공개되며 참관 가능합니다.
- RLA는 카운티 경계 내 온전히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선에 실시됩니다. 감사 시작과 투표용지 선정은 경선이 감사 되는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RLA는 선거 공직자가 최소 5일 이상 위험 제한 감사 및 감사 실시에 사용될 투표용지 선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공고를 제공하는 공개 절차여야 합니다.
- RLA는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의도대로 집계되도록 개별 투표용지를 투표 기록과 비교합니다. 4인의 RLA 위원이 캘리포니아 통일 투표 집계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의 수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 RLA를 실시하는 선거 공직자는 RLA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투표 공식 개표 점검 인증에 발표해야 합니다.
- 감사는 모든 선정된 투표용지가 감사 되고/되거나 95% 신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부록 A: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부록 B: 법령 참고자료

부록 C: 유권자 권리장전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100 피트 표지판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로부터 약 100 피트에 게시되는 표지판. 이 표지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합니다.

Access Controller (액세스 컨트롤러)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를 위한 용도로 Verity Touch Writer 에 포함된 컨트롤러(제어기).

미국인 장애인법 (ADA)

공공 영역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ADA 지침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한 개조가 필요한 투표센터의 경우, 장비 설정 또는 표지판 게시에 대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나타내는 지침이 제공됩니다.

AutoBallot (오토발렛)

Verity Print 및 Verity Touch Writer 에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위해 투표용지 카드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휴대용 기기.

투표용지 박스

Verity Scan 아래 들어가는 큰 검은색 상자. 스캔한 공식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검정색 투표용지 수거 박스

설치하는 날에 투표센터 물품을 운반하는 큰 바퀴 달린 가방. 선거 물품 및 자료가 꺼내어지면 CVR 봉투, VBM 봉투, 폐기용 봉투 및 모든 유효한 스캔하지 않은 종이 투표용지를 위한 투표용지 수거 상자로 사용됩니다.

투표용지 영수증

유권자에게 올바른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영수증 프린터에서 인쇄된 티켓.

투표용지 이관 절차 양식

투표센터와 수거 센터 사이에 투표용지 운송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 매일 저녁 새 양식이 작성되며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에 보내집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VBM 투표용지를 수거하기 위해 설계된 보안 강철 컨테이너. 카운티 전역에 걸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거팀

정기적으로 투표용지 투입함 및 수거센터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ROV 창고로 운송하는 2 인 1 조의 훈련된 직원.

투표용지 유형

선거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경선 조합의 투표용지.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한가지 투표용지 유형에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투표용지 유형을 가진 여러 투표구가 있을 수 있다. 투표용지 유형 정보는 vDrive 로 전달됩니다.

바코드

인쇄된 다양한 너비의 세로 막대로 이루어진 가로 줄무늬로, 10 진법 각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그룹. Hart 투표 시스템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올바르게 스캔하려면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Verity Central 은 바코드를 사용하여 투표용지페이지의 선거 식별자(ID), 정당 ID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만), 언어 ID, 투표구 ID, 시트 ID, 페이지 번호, 투표용지 유형 및 이중 코드를 나타냅니다.

검정색 폴더

차량에서 종이 투표용지로 투표하기를 선택한 유권자가 사용하는 두꺼운 종이 커버 폴더.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

매일 저녁 투표센터에서 수거 센터로 투표용지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큰 파란색 캔버스 가방.

위원회/이중언어 구성원 배지

각 위원을 고객 서비스 담당자라 알려주는 이름 배지. 이중 언어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배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선거에서 정치 공직에 출마하도록 지명된 자.

카드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큰 금속 구조물.

투표 기록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택한 익명 경선 선택지 기록. 하나의 투표 기록은 하나의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투표 마감

선거일 밤 마지막에 모든 투표센터에서 Verity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기기로 완료하는 절차. 투표가 마감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거 센터

투표용지 반납을 위한 지정 시설. 모든 투표센터는 지정 수거 센터가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등록 (CVR)

조건부 유권자등록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의 기존 15 일 등록 마감 기한을 연장하여 선거일 14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임시로 등록 및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경선

투표용지에 해야 할 선택; 경선. 경선 유형은 공직, 법안, 주민투표, 발의안 및 질의를 포함합니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VIG)

건본 투표용지 및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특정 경선의 지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안내서.

가두 투표자

차량에서 또는 투표센터 밖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이 제한된 유권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CSR)

예전에는 투표소 직원으로 알려짐. 고용된 ROV 직원은 투표센터에서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CVR 봉투

유권자 자격에 기반하여 등록 또는 재등록해야 하는 비표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빨간색 테두리의 양식 및 봉투.

일일 봉투 장비 이관 절차 봉투 참조

표지판 투표 정보 표지판 참조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특정 투표센터의 우편 투표용지 반납 지정 구역. 투표 기간 동안 드라이브스루 구역은 매일 아침 설치되며 매일 저녁 철거됩니다.

선거 요약

주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선거법 안내서. 요약본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에서 편집하여 선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합니다. 사본은 투표센터와 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ID

모든 선거 고유의 선거 식별 코드. 선거 ID 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됩니다.

선거운동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 가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으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의 가시적 표시 또는 청각적 유포. 투표센터 안이나 투표를 위한 줄에 있는 유권자에게 아무도 투표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명단 전자기기 (ePollbook)

투표센터에서 전자식으로 유권자를 체크인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

암호화

의도된 수신자 외에 아무도 데이터를 읽지 못하도록 평문을 암호문(암호화된 메시지)으로 변환하기 위해 암호학에서 사용하는 절차.

장비 이관 절차 봉투

투표 환경 보안 유지를 위해 투표 장비의 보안 봉인 및 식별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큰 봉투. 또한 투표센터에서 당일에 인쇄된 모든 보고서 및 투표용지 카드를 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연장 코드

고정 콘센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깃줄.

사건 보고서

투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안/문제를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사용하는 문서.

관할구역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는 투표구 또는 투표구 그룹.

Magnaviewer (매그나뷰어)

시각 장애가 있거나 투표용지 또는 투표 자료를 읽는 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면 확대경.

실시간에 가까운 유권자 데이터

이 선거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권자 명단 전자 기기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통해 암호화된 유권자 등록 및 참여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합니다. 이로써 모든 투표센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유권자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

비표준 유권자

표준 체크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권자. 이러한 유권자는 유권자 명단 전자 기기에 추가 정보 필요 또는 향후 절차 필요를 나타내는 지정이 생깁니다. 투표를 원할 경우 CVR 봉투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

선거 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투표일 동안 투표센터 운영과 선거관리국에서의 투표용지 처리 절차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OC Ballot Express (OC 밸럿 익스프레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온라인 우편 투표용지 추적 시스템.

공식 투표용지

공식 투표용지 종이에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

공식 투표용지 종이

공식 워터마크가 있는 리걸 사이즈 종이. 보안 처리된 프린터, 상자, 그리고/또는 잠금 및 덮개가 있는 카트 내부에 보관합니다.

공식 투표용지 반송 봉투

투표센터를 방문해 교체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에게 주는 우편 투표용지 봉투.

주황색 캔버스 가방

Verity 열쇠, AutoBallot 및 헤드폰 보관에 사용하는 가방.

플라스틱 투표 표지판 및 투표 팻말

유권자를 투표센터 입구로 안내하는 팻말을 사용하여 투표센터로 가는 길에 배치한 방향 안내 표지판.

정당

동일한 이념을 갖거나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된 단체.

투표 모니터 *참관인 참조*

투표소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CSR) 참조

투표소 투표센터 참조

투표구

유권자로 구성되고 선거 행정 목적으로 형성된 카운티 내 지리적 구역.

투표구 공고

투표센터 안과 밖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는 주 총무처가 제공하는 공고. 이 공고는 선거 절차 및 유권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사전 정의

투표센터 장비의 개별 단위가 선정된 투표용지 유형 및 운영될 투표센터에서 제공될 투표구만 사용하여 “정의”되는 선거 전 구성 절차.

대통령 총선거

대통령과 국회 구성원이 선출되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 또한 지역 공직 선거도 포함합니다.

대통령 예비선거

유권자가 다가오는 총선거를 위한 대통령 후보자 및 국회 구성원을 지명하는 선거.

프린터 이관 절차 양식

OKI 프린터 용지 트레이 및 잠금 및 덮개가 있는 카드보드 상자 내 배치된 공식 투표용지 종이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

임시 투표용지

비표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공식 투표용지. 임시 투표용지는 추가 절차를 위해 봉투 안에 투표해야 하며 투표센터의 Verity Scan 기기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ocvote.gov/provisional 을 방문하여 임시 투표용지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임시 봉투 CVR 봉투 참조

임시 유권자 비표준 유권자 참조

조정 기록

각 Verity Scan 기기에서 스캔한 모든 투표용지를 추적하는 기록. 현장 바인더에 위치하며 개장 및 폐장 절차 동안 사용됩니다.

선거관리국 (ROV)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 실시를 책임지는 카운티 기관.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 (RAVBM)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고 기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체 우편 투표용지

유권자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자신의 VBM 투표용지를 교체하도록 투표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우편 투표용지.

보안 스티커

손상되면 “VOID”(무효) 문자를 표시하는, 투표 장비 외부에 붙이는 보안 스티커.

보안 식별표

투표 장비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이 가능한 유선 또는 집타이 유형의 식별표.

비밀 폴더

유권자 선거 선택지(들)의 개인정보 보호 확보에 사용하는 접이식 폴더.

Sip and Puff Tube (빨대 튜브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Verity Touch Writer 에 연결하여 유권자가 입으로 조종하는 개인 투표 입력 기기.

현장 바인더

설치 지침, 이관 절차 양식, 특정 투표센터 정보, 사건 보고 양식 및 연락처 목록을 담은 3 고리 바인더.

작은 녹색 가방

vDrives 의 보관 및 운반에 사용하는 작은 가방.

훼손된 투표용지

유권자의 실수, 기계에 의한 훼손, 또는 중복 인쇄로 무효가 된 투표용지.

폐기용 봉투

폐기된 투표용지 보관에 사용하는 봉투. 매일 밤 훼손된 투표용지 개수를 봉투에 쓰고 밀봉한 봉투를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에 넣어서 수거 센터에 보냅니다.

스탠천

줄 관리를 위해 경계선을 형성하도록 세우는 막대.

표준 유권자

표준 체크인 및 투표 절차를 따르는 유권자.

주 전역 직접 예비선거

유권자가 국회 구성원 및 주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 정당과 관계없이 각 경선의 최다 득표 2 인이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주 전역 총선거

예비선거에서 지명된 최다 득표 2 인 중 한 명이 선출되는 선거. 또한 지역 공직 선거가 포함됩니다.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연방 및 주 전역 후보자와 주 전역 투표 법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스테이션 표지판

체크인, 투표 및 스캔을 위해 해당 스테이션에 배치되는 표지판.

단전 보호용 전기 콘센트

막대형 전기 콘센트.

투표소 일시 중단

투표센터가 밤에 마감하고 다음 날 운영을 재개할 때 Verity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에서 완료되는 절차.

근무시간 기록표

급여 목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에 사용하는 종이.

Translate Utility

여러 언어로 음성을 캡처하고 투표용지 문자를 번역하기 위한 BUILD 응용 프로그램 내 Hart 시스템 유틸리티.

번역된 참조 투표용지

요청 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영어 투표용지의 번역 사본.

vDrives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를 담고 투표 기록을 보관하는 검정색 USB 장치.

Verity Print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기기.

Verity Scan

투표용지 스캔을 위한 디지털 스캐너.

Verity Touch Writer

접근 가능한 투표용지 기표 기기. 유권자는 선택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또는 Access Controller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권리장전

주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필수 언어로 유권자 권리를 요약하며 투표센터 안과 밖에, 눈에 보이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 (VBM) 투표용지

투표센터에서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후보자 및 법안이 실려 있는, 기표 방법과 반송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우송되는 종이 투표용지.

우편투표 (VBM) 봉투

유권자가 VBM 투표용지를 우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봉투.

투표센터

유권자가 투표, 유권자등록 문제 해결, 유권자등록, 전자식 체크인, 교체 투표용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장기간 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풀서비스 현장 투표 경험.

투표센터 핸드북

투표센터 운영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 훈련에 사용하는 매뉴얼.

투표센터 정보 안내서

견본 투표용지와 모든 지역 후보자 및 투표 법안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안내서.

우편투표 현황 *OC Ballot Express* 참조

투표 정보 표지판

투표 장비와 함께 투표센터에 전달되는 진열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권자등록 양식 *CVR 봉투* 참조

투표권법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더 큰 유연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2016 년에 통과된 법안.

기표소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작은 밀폐된 공간.

ADA 휠체어 방향 지시 표지판

이 표지판은 장애 유권자를 투표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기명 후보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유권자가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할 수 있는 후보자.

제로 보고서

첫 투표자가 서명할 Verity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기기에서 인쇄되는 필수 보고서. 보고서는 모두 0 을 표시하며 투표 첫날 이전에 투표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법령 참고자료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인용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을 따릅니다.

참관인의 전자 기기 사용

2302. A voter or any other person shall not be prohibited from using an electronic device, including a smartphone, tablet, or other handheld device, at a polling place provided that the use of the device does not result in a violation of Section 14221, 14224, 14291, 18370, 18502, 18540, 18541,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de.

OCROV 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센터와 Santa Ana 에 위치한 OCROV 사무실의 투표용지 개표점검 작업 구역에서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해당 선거법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194. (a)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194.1, the affidavit of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identified in Section 7924.000 of the Government Code:

(1) Shall be confidential and shall not appear on any computer terminal, list, affidavit, duplicate affidavit, or other medium routin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the county elections official's office.

(2) Shall not be used for any personal, private, or commercial purpo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harassment of any voter or voter's household.

(B) The advertising, solicitation, sale, or marketing of products or services to any voter or voter's household.

(C) Reproduction in print, broadcast visual or audio, or display on the internet or any computer terminal unless pursuant to paragraph (3).

(3) Shall be provided with respect to any vot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2166, 2166.5, 2166.7, 2166.9 and 2188, to any candidate for federal, state, or local office, to any committee for or against any initiative or referendum measure for which legal publication is made, and to any person for election, scholarly, journalistic, or political

purposes, or for governmental purposes,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4) May be u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voters pursuant to Section 12173 of the Government Code.

(b) (1)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the California driver's license number, the California identification card number, the social security number, and any other unique identifier us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for purposes of voter identification shown on the affidavit of voter registration of a registered voter, or added to voter registration record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52 U.S.C. Sec. 20901 et seq.),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the signature of the voter shown on the affidavit of voter registration or an image thereof is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c).

(c) (1) The home address or signature of any voter shall be released whenever the person's vote is challenged pursuant to Sections 15105 to 15108, inclusive, or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4240) of Chapter 3 of Division 14. The address or signature shall be released only to the challenger, to elections officials, and to other persons as necessary to make, defend against, or adjudicate the challenge.

(2) An elections official shall permit a person to view the signature of a voter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signature compares with a signature on an affidavit of registration or an image thereof or a petition, but shall not permit a signature to be copied.

(d) A governmental entity, or officer or employee thereof, shall not be held civilly liable as a result of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is section, unless by a showing of gross negligence or willfulness.

(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voter's household" is defined as the voter's place of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or any persons who reside at the place of residence or use the mailing address as supplied on the affidavit of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s (3) and (4) of subdivision (a) of Section 2150.

(f) (1)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information regarding voters who did not sign a vote by mail ballot identification envelope or whose signature on the vote by mail ballot identification envelope did not compare with the voter's signature on file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Section 7924.000 of the Government Code.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with respect to any vot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2166, 2166.5, 2166.7, 2166.8, 2166.9, and 2188, to any candidate for federal, state, or local office, to any committee for or against any initiative or referendum measure for which legal publication is made, and to any person for election, scholarly, journalistic, or political purposes, or for governmental purposes,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ut otherwise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Any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notice to the recipient regarding Sections 18109 and 18540.

(2) Voter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shall be updated daily, include the name of the voter, and be provided in a searchable electronic format. The daily update shall also include, as applicable, information regarding whether a form has been received from the voter to verify their signature pursuant to subdivision (d) of Section 3019, whether a form has been received or the voter has otherwise provided a signature pursuant to subdivision (e) of Section 3019, and whether the signature provided pursuant to subdivision (d) or (e) of Section 3019 did or did not compare.

7924.000 of the California Government Code

(a)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194 of the Elections Code, both of the following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1) The home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precinct number, or other number specifi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voter registration purposes.

(2) Prior registration information shown on an affidavit of registration.

(b) The California driver's license number, the California identification card number, the social security number, and any other unique identifier us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for purposes of voter identification shown on an affidavit of registration, or added to the voter registration record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52 U.S.C. Sec. 20901 et seq.),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c) The signature of the voter that is shown on an affidavit of registration is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home address” means street address only, and does not include an individual’s city or post office address.

Section 19001(h) of Title 2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h)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on registered voters that may be provided to an authorized applicant by a source agenc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lections Code section 2194, and Government Code section 6254.4. This information includes the following for each voter, to the extent that it is included in any individual voter’s record: registration county, unique registration identification number, name, residential address, mailing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language preference, date of birth, gender, party preference, registration status, registration date, precinct, registration method, place of birth, registration status reason (reason for the most recent update to the registration), voting assistance request status, permanent Vote-by-Mail status, county voter identification number, and voting participation history (election date and voting method).

14221. Only voters engaged in receiving, preparing, or depositing their ballots and persons authorized by the precinct board to keep order and enforce the law may be permitted to be within the voting booth area before the closing of the polls.

14224. (a)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4222, a voting booth or compartment shall not be occupied by more than one person at a time, unless the voter is eligible under the assisted-voter provisions.

(b)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a voter shall not remain in or occupy a voting booth or compartment longer than is necessary to mark his or her ballot, which shall not exceed 10 minutes.

(2) If a voter informs a precinct board member that the voter requires additional time to mark his or her ballot, a longer period shall be allowed. However, if the precinct board member determines that the voter is attempting to interfere with the conduct of the election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time to mark his or her ballot, the precinct board member may contact the elections official, who may order that the voter not be provided with additional time to mark his or her ballot.

14291. (a) After the ballot is marked, a voter shall not show it to any person in a manner that reveals its contents,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 (b) A voter may voluntarily disclose how he or she voted if that voluntary act does not violate any other law.
18370. See “Criminal Interference with Voters” section below.
18502. (a) Any person who in any manner interferes with the officers holding an election or conducting a canvass, as to prevent the election or canvass from being fairly held and lawfully conducted, or with the voters law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of voting at an election,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of the Penal Code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officers holding an election or conducting a canvas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the chief elections officer, and their staff, as it relates to performance of any of their duties related to administering the provisions of the Elections Code, and elections officials and their staff, including temporary workers and poll workers, and members of a precinct board, in their performance of any duty related to assisting with holding an election or conducting a canvass.
- (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holding an election or conducting a canvas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election observation process governed by the Election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adop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voting at an elec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voting in person at a polling place,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and satellite locations, and voting by mail and returning a voted ballot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3017.
18540. (a) Every person who makes use of or threatens to make use of any force, violence, or tactic of coercion or intimidation, to induce or compel any other person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or because any person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of the Penal Code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b) Every person who hires or arranges for any other person to make use of or threaten to make use of any force, violence, or tactic of coercion or intimidation, to induce or compel any other person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or because any person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of the Penal Code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voting at any elec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voting in person at a polling place,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and satellite locations, and voting by mail and returning a voted ballot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3017.

18541. (a) A person shall not, with the intent of dissuading another person from voting, within the 100-foot limit specified in subdivision (b), do any of the following:

(1) Solicit a vote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marking the voter's ballot.

(2) Place a sign relating to voters' qualifications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the voter's qualifications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4240.

(3) Photograph, video record, or otherwise record a voter entering or exiting a polling place.

(4) Obstruct ingress, egress, or parking.

(b) The activities described in subdivision (a) are prohibited within 100 feet of either of the following:

(1) The entrance to a building that contains a polling place as defined by Section 338.5, an elections official's office, or a satellite location.

(2) An outdoor site, including a curbside voting area, at which a voter may cast or drop off a ballot.

(c) A person shall not, with the intent of dissuading another person from voting, do any of the following within the immediate vicinity of a voter in line to cast a ballot or drop off a ballot:

(1) Solicit a vote.

(2) Speak to a voter about marking the voter's ballot.

(3) Disseminate visible or audible electioneering information.

(d) A violation of this section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12 months, or in state prison. Any person who conspires to violate this section is guilty of a felony.

투표 개표점검 - 개표점검 위원

15304. In jurisdictions using a central counting place, the elections official may appoint not less than three deputies to open the envelopes or containers with the materials returned from the precincts. If, after examination, any of the materials are incomplete, ambiguous, not properly authenticated, or otherwise defective, the precinct officers may be summoned before the elections official and examined under oath to describe polling place procedures and to correct the errors or omissions.

개표점검 - 우편 투표용지 (VBM)

15100.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pply to the processing of VBM ballots during the 29-day period before any election, during the semifinal official canvass, and during the official canvass.

15101. (a) An elections official may begin to process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s and vote by mail ballots on the date on which the ballots are mailed, which shall not be later than 29 days before the election.

(b) (1) Processing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s may include verifying the voter's signature on the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 pursuant to Section 3019 and updating voter history records.

(2) Processing vote by mail ballots includes opening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s, removing ballots, duplicating any damaged ballots, and preparing the ballots to be machine read, or machine reading them, including processing write-in votes so that they can be tallied by the machine, but under no circumstances may a vote count be accessed or released until 8 p.m. on the day of the election.

(c) Results of any vote by mail ballot tabulation or count shall not be released before the close of the polls on the day of the election.

15102. The official shall appoint a special counting board or boards in numbers that he or she deems adequate to count the VBM ballots. The official shall provide for the forms of tally book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duties of the members of the canvassing board. When the tally is done by hand, there shall be no less than four persons for each office or proposition to be counted. One shall read from the ballot, the second shall keep watch for any error or improper vote, and the other two shall keep the tally.

15103.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pay a reasonable compensation to each member of the canvassing board of VBM ballots. This compensation shall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agency conducting the election as other claims against it are paid.

15104. (a) The processing of VBM ballot return envelopes, and the processing and counting of VBM ballot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oth prior to and after the election.

(b) A member of the county grand jury, and at least one member each of the Republican county central committee, the Democratic county central committee, and of any other party with a candidate on the ballot, and any other interested organization, shall be permitted to observe and challenge the manner in which the VBM ballots are handled, from the processing of VBM ballot return envelopes through the counting and disposition of the ballots.

(c)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notify VBM voter observers and the public at least 48 hours in advance of the dates, times, and places where VBM ballots will be processed and counted.

(d)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subdivision (b) of Section 2194, vote by mail voter observers shall be allowed sufficiently close access to enable them to observe the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s and the signatures thereon and challenge whether those individuals handling vote by mail ballots are following established procedures, including all of the following:

- (1) Verifying signatures on the vote by mail ballot return envelopes by comparing them to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 (2) Duplicating accurately any damaged or defective ballots.
- (3) Securing VBM ballots to prevent any tampering with them before they are counted on election day.

(4) Verifying signatures on statements completed pursuant to subdivisions (d) and (e) of Section 3019.

(e) A VBM voter observer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orderly processing of VBM ballot return envelopes or processing and counting of VBM ballots, including touching or handling of the ballots.

15105. Challenges to a vote by mail voter may be made for the same reasons as those made against a voter voting at a polling place. In addition, a challenge may be entered on the grounds that the ballot wa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provided by this code or that a person is currently serving a state or federal prison term for the conviction of a felony. All challenges shall be made prior to the opening of the identification envelope of the challenged vote by mail voter.
15106.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 processing of VBM ballot return envelopes, the processing and counting of VBM ballots, and the disposition of challenges of VBM ballots shall be according to the laws now in force pertaining to the election for which they are cast. Because the voter is not present, the challenger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extraordinary proof of the validity of the challenge at the time the challenge is made.
15109.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the counting and canvassing of VBM ballots shall be conducte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regulations as used for ballots cast in a precinct polling place.
15110. Reports to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findings of the canvass of VBM ballots shall be made by the elections official pursuant to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15150) and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5300).
15111.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keep an accurate list of all voters who have received and voted a VBM ballot at each election and compare this list with the roster of voters as provided in Section 15278. That list shall include the election precinct of the voter.
15112. When elections are consolidated pursuant to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 and only one form of ballot is used at the consolidated election, the ballots cast by VBM voters shall be counted only in connection with elections to which VBM voter privileges have been extended by law.

Whenever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VBM voters' ballots shall be received by the elections official in order to be counted, as provided for any election by this code or any other law of this state, is different from that period of time provided for another election, and the elections are consolidated and only one form of ballot used for both elections, all VBM voters' ballots issued for the consolidated election may be counted for both elections if received by the elections official within whichever period of time is longer.

개표점검 – 1% 수작업 집계

15360. (a) During the official canvass of every election in which a voting system is used,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nduct a public manual tally of the ballots tabulated by those devices, including vote by mail ballots, using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1) (A) A public manual tally of the ballots canvassed in the semifinal official canvass, including vote by mail ballots but not including provisional ballots, cast in 1 percent of the precincts chosen at random by the elections official. If 1 percent of the precincts is less than one whole precinct, the tally shall be conducted in one precinct chosen at random by the elections official.

(B) (i) In addition to the 1 percent manual tally,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for each rac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group of precincts, count one additional precinct. The manual tally shall apply only to the race not previously counted.
(ii) The elections official may, at the elections official's discretion, select additional precincts for the manual tally, which may include vote by mail and provisional ballots.

(2) A two-part public manual tally, which includes both of the following:

(A) A public manual tally of the ballots canvassed in the semifinal official canvass, not including vote by mail or provisional ballots, cast in 1 percent of the precincts chosen at random by the elections official and conducted pursuant to paragraph (1).

(B) (i) A public manual tally of not less than 1 percent of the vote by mail ballots canvassed in the semifinal official canvass. Batches of vote by mail ballots shall be chosen at random by the elections official.

(ii)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batch" means a set of ballots tabulated by the voting system devices, for which the voting system can produce a report of the votes cast.

(iii) (I) In addition to the 1 percent manual tally of the vote by mail ballots,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for each rac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1 percent manual

tally of vote by mail ballots, count one additional batch of vote by mail ballots. The manual tally shall apply only to the race not previously counted.

(II) The elections official may, at the elections official's discretion, select additional batches for the manual tally, which may include vote by mail and provisional ballots.

(b)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use either a random number generator or other method specified in regulations that shall be adop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randomly choose the initial precincts, batches of vote by mail ballots, or direct recording electronic voting machines subject to the public manual tally.

(c)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not randomly choose the initial precincts or select an additional precinct for the manual tally until after the close of the polls on election day.

(d) The manual tally shall be a public process, with the official conducting the election providing at least a five-day public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manual tally and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selection of the precincts, batches, or direct recording electronic voting machines subject to the public manual tally before conducting the selection and tally.

(e)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include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1 percent manual tally in the certification of the official canvass of the vote. This report shall identify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machine count and the manual tally and a description of how each of these discrepancies was resolved. In resolving a discrepancy involving a vote recorded by electronic or electromechanical vote tabulating devices, the voter verified paper audit trail shall govern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it and the electronic record.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14240. (a) A person offering to vote may be orally challenged within the polling place only by a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upo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grounds:

- (1) That the voter is not the person whose name appears on the roster.
- (2) That the voter is not a resident of the precinct, or in an election conducted using a voter center, not a resident of the county.
- (3) That the voter is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4) That the voter has voted in that election.

(b) A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a precinct board or other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election, shall not challenge or question any voter concerning the voter's qualifications to vote.

(c) If any member of a precinct board receives, by mail or otherwise, any document or list concerning the residence or other voting qualifications of any person or persons, with the express or implied suggestion, request, or demand that the person or persons be challenged, the board member shall first determine whether the document or list contains or is accompanied by evidence constituting probable cause to justify or substantiate a challenge. In any case, before making any use whatever of such a list or document, the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shall immediately contact the elections official, charged with the duty of conducting the election, and describ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or list and the evidence, if any, received bearing on voting qualifications.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advise the members of the precinct board as to the sufficiency of probable cause for instituting and substantiating the challenge and as to the law as herein provided, relating to hearings and procedures for challenges by members of the precinct board and determination thereof by a precinct board. The elections official may, if necessary, designate a deputy to receive and answer inquiries from precinct board members as herein provided.

14241. A piece of mailed matter returned undelivered by the post office shall not be accepted or used as evidence upon which to initiate a challenge as to residency by any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unless other evidence or testimony is also presented, nor shall the mailed matter, standing alone without other evidence or testimony, be accepted as evidence by the precinct board in determining a challenge.
14242. The ground for challenge set forth in paragraph (2)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4240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duly registered as a voter in any precinct in California and moving from that precinct within 14 days prior to an election.
14243. If the challenge is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seeking to vote is not the person whose name appears on the roster, a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shall tender the following oath: "You do swear (or affirm) that you are the person whose name is entered on the roster."
14244. If the challenge is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seeking to vote is not a resident of the precinct, or in an election conducted using a vote center, not a resident of the county, the person challenged shall be sworn to answer questions, and after having been sworn, a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shall ask that person: "Are you a resident of this precinct?" or in an election conducted using a vote center, "Are you a

resident of the county?"; If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Yes," without significant qualification, no other questions shall be asked.

14245. If the challenge is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challenged has already cast a ballot for this election, a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shall tender to the person challenged this oath: "You do swear (or affirm) that you have not previously voted in this election, either by VBM ballot or at a polling place."
14246. If the challenge is on the ground either that the person challenged is not the person whose name appears on the roster, or that he or she has voted that day, the challenge shall be determined in favor of the person challenged if that person takes the oath as set forth either in Section 14243 or 14245.
14247. Challenges of voters that they are not residents of the precinct or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ried and determined by the precinct board at the time of the challenge. The precinct board may, at its discretion, also request any other person, present in the polling place to be sworn and answer questions, whom the board believes may have knowledge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facts of the challenge.
14248. Before administering an oath to a person regarding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a member of the precinct board shall read to the person challenged, the rules prescribed by Section 14249 and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2020) of Chapter 1 of Division 2.
14249. If any person challenged refuses to take the oaths tendered, or refuses to be sworn and to answer the questions concerning the matter of residence, that person shall not be allowed to vote.
14250. The precinct board, in determining the place of residence of any person,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set forth in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2020) of Chapter 1, Division 2.
14251. Any doub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hall be resolved in favor of the challenged voter.
14252. The precinct board shall compile a list showing all of the following:
- (a)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person challenged.
 - (b) The name, address, and any other identification as a voter, of each person offering information concerning any person's qualifications to vote, or testifying pursuant to Section 14247, together with the name and address and any other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about whom the information or testimony is given.

- (c) The grounds of each challenge.
- (d) The determination of the board upon the challenge, together with any written evidence pertaining thereto.
- (e) If evidence has been presented to the board requesting challenges, the evidence shall be returned to the elections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election.

14253. In the event that the precinct board determines that persistent challenging of voters is resulting in a delay of voting sufficient to cause voters to forego voting because of insufficient time or for fear of unwarranted intimidation, the board shall discontinue all challenges, and so note on the roster.

선거운동 금지

경고: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유권자의 바로 근처나 투표소 입구, 가두 투표 또는 투입함에서 100 피트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용지 투입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투표용지 투입함 근처를 배회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근처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자료 또는 청각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법률발의안, 주민투표, 소환 또는 후보자 지명을 포함하여 어떠한 청원서도 배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및/또는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포함하는 의류(모자, 셔츠, 싸인,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 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시하시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위에 요약된 선거운동 금지 사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8 부 4 장 7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

경고: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은 벌금형 및/또는 징역형 대상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

- 부정선거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떠한 방식 또는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어떠한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으로 투표하지 **마십시오.**
- 투표할 자격이 없을 때 투표하거나 타인의 투표를 도우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선거 운동에 관여하거나;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투표소 출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의 투표권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자격이 없다거나 유권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허위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소지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치안관, 경비원 또는 보안 인력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누군가에게 나타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 모조, 또는 조작하지 **마십시오.**
- 선거의 결과를 변조하지 **마십시오.**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용지 또는 투표 컨테이너를 조작, 파괴 또는 변조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수거함이라고 믿도록 속일 수 있는 비공식 투표용지 수거함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이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노인을 자신의 의향에 반하여 후보자나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 선거 공직자가 아닌데 선거 공직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직장으로 가져오라고 요구 또는 요청하거나 직장에서 투표하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투표구 위원은 유권자의 투표방식을 결정하려고 시도하거나, 해당 정보가 발견된 경우 유권자의 투표방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에 요약된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과 관련된 활동 금지 사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8 부 6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범죄적 간섭

18370. (a) A person shall not, on election day, or at any time that a voter may be casting a ballot, within the 100 foot limit specified in subdivision (b), do any of the following:
- (1) Circulate an initiative, referendum, recall, or nomination petition or any other petition.
 - (2) Solicit a vote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marking the voter's ballot.
 - (3) Place a sign relating to voters' qualifications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the voter's qualifications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4240.
 - (4) Do any electioneering as defined by Section 319.5.
- (b) The activities described in subdivision (a) are prohibited within 100 feet of either of the following:
- (1) The entrance to a building that contains a polling place as defined by Section 338.5, an elections official's office, or a satellite location.
 - (2) An outdoor site, including a curbside voting area, at which a voter may cast or drop off a ballot.
- (c) A person shall not, on election day, or at any time that a voter may be casting a ballot, do any of the following within the immediate vicinity of a voter in line to cast a ballot or drop off a ballot:
- (1) Solicit a vote.
 - (2) Speak to a voter about marking the voter's ballot.
 - (3) Disseminate visible or audible electioneering information.
- (d) Any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18540. (a) Every person who makes use of or threatens to make use of any force, violence, or tactic of coercion or intimidation, to induce or compel any other person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or because any person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of the Penal Code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b) Every person who hires or arranges for any other person to make use of or threaten to make use of any force, violence, or tactic of coercion or intimidation, to induce or compel any other person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to vote or refrain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or because any person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at any election or voted or refrained from vo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measure at any electi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of the Penal Code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voting at any elec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voting in person at a polling place,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and satellite locations, and voting by mail and returning a voted ballot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3017.

18541.

(a) A person shall not, with the intent of dissuading another person from voting, within 100 foot limit specified in subdivision

(b), do any of the following:

- (1) Solicit a vote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marking the voter's ballot;
- (2) Place a sign relating to voters' qualifications or speak to a voter on the subject of the voter's qualifications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4240.
- (3) Photograph, videorecord, or otherwise record a voter entering or exiting a polling place.
- (4) Obstruct ingress, egress, or parking.

(b) The activities described in subdivision (a) are prohibited within 100 feet of either of the following:

- (1) The entrance to a building that contains a polling place as defined by Section 338.5, an elections official's office, or a satellite location.
- (2) An outdoor site, including a curbside voting area, at which a voter may cast or drop off a ballot.

(c) A person shall not, with the intent of dissuading another person from voting, do any of the following within the immediate vicinity of a voter in line to cast a ballot or drop off a ballot:

- (1) Solicit a vote.
- (2) Speak to a voter about marking the voter's ballot.
- (3) Disseminate visible or audible electioneering information.

(d) A violation of this section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12 months, or in the state prison. Any person who conspires to violate this section is guilty of a felony.

18543. (a) Every person who knowingly challenges a person's right to vote without probable cause or on fraudulent or spurious grounds, or who engages in mass, indiscriminate, and groundless challenging of voters sol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voters from voting or to delay the process of voting, or who fraudulently advises any person that he or she is not eligible to vote or is not registered to vote when in fact that person is eligible or is registered, or who violates Section 14240,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12 months or in the state prison.
- (b) Every person who conspires to violate subdivision (a) is guilty of a felony.

임시 투표용지

14310. (a) At all elections, a voter claiming to be properly registered, but whose qualification or entitlement to vote cannot be immediately established upon examination of the roster for the precinct or upon examination of the records on file with the county elections official, shall be entitled to vote a provisional ballot as follows:
- (1) An elections official shall advise the voter of the voter's right to cast a provisional ballot.
- (2) The voter shall be provided a provisional ballot, written instructions regarding the process and procedures for casting the ballot, and a written affirmation regarding the voter's registration and eligibility to vote. The written instructions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subdivisions (c) and (d).
- (3) The voter shall be required to execute, in the presence of an elections official, the written affirmation stating that the voter is eligible to vote and registered in the county where the voter desires to vote.
- (b) Once voted, the voter's ballot shall be sealed in a provisional ballot envelope, and the ballot in its envelope shall be deposited in the ballot box. All provisional ballots voted shall remain sealed in their envelopes for return to the elections official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s official's instructions. The provisional ballot envelopes specified in this subdivision shall be of a color different than the color of, but printed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envelopes used for vote by mail ballots, and shall be completed in the same manner as vote by mail envelopes.
- (c)(1) During the official canvass,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examine the records with respect to all provisional ballots cast. Using the procedures that apply to the comparison of signatures on vote by mail

ballots pursuant to Section 3019,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mpare the signature on each provisional ballot envelope with the signature on the voter's affidavit of registration or other signature in the voter's registration record. If the signatures do not compare or the provisional ballot envelope is not signed, the ballot shall be rejected. A variation of the signature caused by the substitution of initials for the first or middle name, or both, shall not invalidate the ballot.

(2) (A) Provisional ballots shall not be included in any semiofficial or official canvass, except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The elections official establishes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from the records in his or her office, the claimant's right to vote. (ii) The provisional ballot has been cast and included in the canvass pursuant to Article 4.5 (commencing with Section 2170) of Chapter 2 of Division 2.

(iii) Upon the order of a superior court in the county of the voter's residence. (B) A voter may seek the court order specified in this paragraph regarding his or her own ballot at any time prior to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Any judicial action or appeal shall have priority over all other civil matters. A fee shall not be charged to the claimant by the clerk of the court for services rendered in an action under this section.

(3) The provisional ballot of a voter who is otherwise entitled to vote shall not be rejected because the voter did not cast his or her ballot in the precinct to which he or she was assigned by the elections official.

(A) If the ballot cast by the voter contains the same candidates and measures on which the voter would have been entitled to vote in his or her assigned precinct,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unt the votes for the entire ballot.

(B) If the ballot cast by the voter contains candidates or measures on which the voter would not have been entitled to vote in his or her assigned precinct,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unt only the votes for the candidates and measures on which the voter was entitled to vote in his or her assigned precinct.

(d)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establish a free access system that any voter who casts a provisional ballot may access to discover whether the voter's provisional ballot was counted and, if not, the reason why it was not counted.

(e) The Secretary of State may adopt appropriat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is section.

(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ny vote by mail voter described by Section 3015 who is unable to surrender his or her unvoted vote by mail voter's ballot.

(g) Any existing supply of envelopes marked "special challenged ballot" may be used until the supply is exhausted.

14311. (a) A voter who has moved from one address to another within the same county and who has not re-registered to vote at that new address may, at his or her option, vote on the day of the election at the polling place at which he or she is entitled to vote based on his or her current residence address, or at the office of the county elections official or other central location designated by that elections official. The voter shall be re-registered at the place of voting for future elections.
(b) Voter's casting ballot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quired to vote by provisional ballot, as provided in Section 14310.
14312. This article shall be liberally construed in favor of the provisional voter.
15350. Provisional ballots cast pursuant to Section 14310 shall be processed and cou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utlined in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15100) an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14310 and 14311.

재검표

15620. (a) Following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any voter may, within five calendar days thereafter but not later than 5 p.m. on the fifth day, file with the elections official responsible for conducting an election in the county wherein the recount is sought a written request for a recount of the votes cast for candidates for any office, for slates of presidential electors, or for or against any measure, if the office, slate, or measure is not voted on statewide. The request shall specify on behalf of which candidate, slate of electors, or position on a measure (affirmative or negative) it is filed.
- (b) If an election is conducted in more than one county, the request for the recount may be filed by any voter within five days but not later than 5 p.m. on the fifth day, beginning on the 31st day after the election, with the elections official of, and the recount may be conducted within, any or all of the affected counties.
- (c)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shall be presumed to be that time when the elections official signs the certified statement of the results of the election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city election, if a city council canvasses the returns itself and does not order the elections official to conduct the canvass,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shall be presumed to be that time when the governing body declares the persons elected or the measures approved or defeated.

15621. (a) Following completion of the official canvass any voter may, within five calendar days beginning on the 31st day after a statewide election, fil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 written request for a recount of the votes cast for candidates for any statewide office or for or against any measure voted on statewide. The request fil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specify in which county or counties the recount is sought and shall specify on behalf of which candidate, slate of electors, or position on a measure (affirmative or negative) it is filed.
- (b)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forthwith send by electronic delivery one copy of the request to the elections official of each county in which a recount of the votes is sought, and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nfirm receipt of the copy in writing by electronic delivery to the Secretary of State.
- (c) All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recounts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15622. The request may specify the order in which votes are recounted by precinct or by the batch in which the ballots were scanned. In the case of a recount that includes more than one county, the request may specify the order that counties will conduct the recount within the jurisdiction.
15623. Any time during the conduct of a recount and for 24 hours thereafter, any other voter may request the recount of any precincts in an election for the same office, slate of presidential electors, or measure not recounted as a result of the original request.
15624. The voter or the campaign committee, as defined in Section 82013 of the Government Code, represented by the voter filing the recount request, or the voter's designee, shall, before the recount is commenced and at the beginning of each day following, deposit with the elections official a sum as required by the elections official to cover the cost of the recount for that day. The money deposited shall be returned to the depositor if, upon completion of the recount, the candidate, slate of presidential electors, or the position on the measure (affirmative or negative) for which the declaration is filed is found to have received the plurality of votes cast which it had not received according to the official canvass or, in an election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andidates, the recount results in the candidate for whom the recount was requested appearing on the ballot in a subsequent runoff election or general election who would not have so appeared in the absence of the recount. The depositor shall be entitled to the return of any money deposited in excess of the cost of the recount if the candidate, slate, or position on the measure has not received the plurality of the votes cast or, in an election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andidates, the recount does not result in the candidate for whom the recount was requested appearing on the ballot in a subsequent runoff or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of the recount. Money not required to be refunded shall be deposited in the appropriate public treasury.

15625. (a) The recount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elections official.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convene special recount boards consisting of four individuals appointed by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elections official. The requester shall reimburse the county for the cost of each member of a recount board.

(b) If an individual appointed to a special recount board is required to tally any ballots as part of their role on the special recount board, that individual shall be eligible to register to vote in this state pursuant to Section 2101.

(c) If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is the subject of the recount, the governing body shall appoint an officer, other than the elections official, to appoint and supervise the special recount boards. The appointee shall possess demonstrable experience necessary to conduct a machine or manual recou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years of experience as an elections official in the state, experience with current voting systems, and knowledge of the voting system's key functions.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that is subject to the recount from taking necessary steps to prepare for the recou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an alternative qualified officer is sought.

15626. (a) The recount shall be commenced not more than seven business days following the receipt by the elections official of the request or order for the recount under Section 15620, 15621, or 15645 and shall be continued daily,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for not less than six hours each day until completed.

(b) If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is the subject of the recount, the recount shall commence not more than seven business days following the appointment of an officer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b) of Section 15625.

(c) The recount shall not be commenced until the first day following notification of the individuals specified in Section 15628.

15627. (a) If the votes subject to recount were cast or tabulated by a voting system, the voter requesting the recount shall, for each set of ballots cast or tabulated by a type of voting system, select whether the recount shall

be conducted manually, or by means of the voting system used originally. Only one method of recount may be used for all ballots cast or tabulated by the same type of voting system.

(b)(1) If the recount is to be conducted manually and the voting system has the capability to display ballot images, the voter requesting the recount shall select whether the recount shall be conducted by use of paper ballots or the official ballot images.

(2) If more than one voter requests that a recount be conducted manually for the same office or measure, and at least one request is for the recount to be conducted by use of paper ballots, the county elections official of a county subject to multiple requests as described in this subdivision shall conduct only a manual recount of the paper ballots, the result of which shall be controlling.

15628. Not less than one day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recount,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post a notice as to the date and place of the recount and shall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of it in person, by email, or by any federally regulated overnight mail service:

(a) All candidates for any office the votes for which are to be recounted.

(b)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to whom electors are pledged if the votes to be recounted were cast for presidential electors.

(c) Proponents of any initiative or referendum or persons filing ballot arguments for or against any initiative, referendum, or measure placed on the ballot by the governing body the votes for which are to be recounted.

(d) The Secretary of State in the case of a recount of the votes cast for candidates for any state office, presidential elector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r delegates to a national convention or on any state measure.

15629. The recount shall be conducted publicly.

15630. (a) All ballots, whether voted or not, and any other relevant materials, as specified in regulations adop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may be examined as part of any recount if the voter filing the declaration requesting the

recount so requests in writing, specifying the relevant material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count.

(b) The examination of any ballot shall not include touching or handling the ballo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elections official or the elections officer supervising the special recount board. A ballot shall not be touched or handled during the examination unless the elections official or the elections officer supervising the special recount is present to observe the examination.

(c) Except as provided in this section, a ballot shall not be touched or handled by any person during the recount unless that person is the elections official, a person acting at the direction of the elections official, a member of the special recount board, or by order of the superior court.

(d) No part of the voting system in use by the elections office shall be accessed, touched, or handled by any person during the recount unless that person is the elections official or authorized by order of the superior court.

(e) A person shall not photograph or distribute a digital image of any material with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the voter.

15631. On recount, ballots may be challenged for incompleteness, ambiguity, or other defec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a) The person challenging the ballot shall state the reason for the challenge.

(b) The official counting the ballot shall count it as the official believes proper and then set it aside with a notation as to how it was counted.

(c) The elections official or appointee pursuant to Section 15625 shall, before the recount is completed, determine whether the challenge is to be allowed. The decision of the elections official is final.

15632. In lieu of the returns as reported in the official canvass, upon completion of the recount showing that a different candidate was nominated or elected, that a different presidential slate of electors received a plurality of the votes, or that a measure was defeated instead of approved or approved instead of defeated, the result of the recount in each precinct affected shall, for all purposes thereafter, be the official returns of those precincts for the office, slates of presidential electors, or measure involved in the recount. If the office, slates of presidential electors, or measure are not voted on statewide, the results of any recount which is not completed by counting the votes in each and every precinct in the jurisdiction within which votes were cast on the candidates for the office, on the slates of electors, or on the measure in question shall be declared null and void. If the office, slates of presidential electors, or measure are voted on

statewide, the results of any recount will be declared null and void where there is not recounted each vote cast statewide for the office, slates, or measure.

15633. Not more than one da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recount,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post a copy of the results of any recount conducted pursuant to this chapter conspicuously in the office of the elections official or on the elections official's internet website for a period of 30 days following the final day of recount activities. The elections official shall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of it in person, by email, or by any federally regulated overnight mail service:

(a) All candidates for any office the votes for which were recounted.

(b)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to whom electors were pledged, if the votes recounted were cast for presidential electors.

(c) Proponents of any initiative or referendum or persons filing ballot arguments for or against any initiative, referendum, or measure placed on the ballot by the governing body the votes for which were recounted.

(d) The Secretary of State in the case of a recount of the votes cast for candidates for any state office, presidential elector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r delegates to a national convention, or on any state measure.

또한 CCR, 제 2 편, 7 부, 8.1 장을 확인하십시오

연방법

2002년 미국 선거지원법

주요 조항: (1) 모든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비공개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하기 전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확인, 수정 및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표 시스템 기준 및 자금을 제공하며; (2) 유권자가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3) 처음으로 유권자등록을 할 때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4) 군 및 해외 거주 유권자의 투표를 원활하게 하며; (5) 유권자의 불만 제기를 원활하게 하며; 그리고 (6) 선거 과정을 감독하고 연구하기 위해 선거 지원 위원회를 창설합니다. 1984년 노인 및 장애인 투표 접근성법[42 USC 1973ee]은 일반적으로 투표소가 연방 선거를 위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가 원격 타자기(TTY)라고도 알려진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 장치(TDD)를 통한 정보를 포함한 장애인 및 노인 유권자를 위한 등록 및 투표 보조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1993년 전국 유권자등록법

(통칭: 자동차 유권자법; NVRA.) 이 법의 목적은 모든 미국인이 더 쉽게 유권자등록을 하고 등록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일반 지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지원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또는 주에서 승인한 형식의 우편 양식을 이용하여 유권자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선거 공직자가 최신 유권자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특정 단계를 거치고, 유권자에게 등록 상황을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990년 미국인 장애인법

(통칭: ADA.) ADA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과 관계 또는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ADA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이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한 장애의 병력 또는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타인에 의해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입니다. 이 법의 제 2편은 주 및 지방 정부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제공합니다.

1965년 투표권법

언어 소수 집단 (LMG). §4(f)(4) 및 §203을 참고하십시오; 해석과 지침은 연방 규정집(7/1/99 버전, 제 28 편, 1 장, 55 부, §§55.1-55.24)에 제공됩니다. 소수 언어 조항은 1975년에 이 법에 추가되었으며, 2002년 7월 인구조사국 통계 발표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는 §203(c)에 따라 적용

대상 관할권이 되었습니다 (67 연방 규정 144, 48871). 언어 조항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는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및 스페인어로 된 선거 자료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활동은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선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 또는 투표 통지, 양식, 지침, 지원,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LMG 구성원이 투표 관련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권리장전

1. 유효 등록 유권자(미국에 거주하고, 18 세 이상이며 중범 유죄판결을 받아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및 법원에 의해 투표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현재 판명되지 않은 미국 시민)인 경우 귀하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는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을 경우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투표 마감 이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줄을 서고 있었으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위협받지 않고 기밀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최종적으로 투표를 끝내기 전 언제든지, 실수를 했다고 느껴지면 훼손된 투표용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VBM 투표자 또한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 본인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선거 공직자에게 반납하는 경우 새로운 투표용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귀하는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작성한 VBM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 어떤 투표구로든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는 귀하의 투표구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일정 수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는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선거 절차에 대해 투표구 위원회와 선거 공직자들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얻거나 답변할 담당 공직자에게 안내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질문이 직무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원회나 선거 공직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귀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지역 선거 공직자 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부정선거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주 총무장관 기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00-345-VOTE (8683)로 전화해 주십시오.

선거 공직자는 귀하의 유권자등록 선서진술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표소 위치와 투표용지에 있는 안건 및 후보자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를 발송합니다. 유권자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표결 법안 위원회나, 기타 선거, 학계, 언론, 정치 또는 정부 목적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유권자등록 카드에 있는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귀하의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의심되는 해당 정보의 오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주 총무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1-800-345-VOTE (8683)로 전화해 주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특정 유권자들은 기밀 유권자 신분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의 Safe at Home 프로그램 수신자 부담 전화 1-877-322-5227 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 를 방문해 주십시오.

